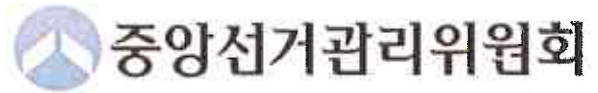


대한민국 재외선거 - 이렇게 합니다.



제공일자 2010. 5. 26.

총 1 편

www.nec.go.kr

☎82-2-503-0648

FAX82-2-504-5350

재외선거 무효투표와 유효투표의 판단기준

- 재외선거는 재외투표소에 직접 가서 후보자의 성명, 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을 투표용지에 적고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.

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은 재외투표소에 가서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투표용지에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기호 또는 소속 정당의 명칭을,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정당의 명칭이나 그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하여야 하며, 투표지를 구·시·군선거관리위원회가 발송한 회송용 봉투에 넣고 봉합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유효한 투표지로 인정받습니다.

이런 투표는 무효입니다	이런 투표는 유효입니다
▶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▶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▶ 회송용 봉투가 봉합되지 않은 것 ▶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알 수 없는 것 ▶ 재외투표소에서 투표하지 않은 것 ▶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것 ⇒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함께 적은 것도 무효	▶ 같은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2 회 이상 적은 것 ▶ 성명.기호 또는 정당의 명칭이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▶ 회송용 봉투에 성명.거소가 적혀 있거나 사인(개인 도장)이 날인된 것 ▶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선거인의 투표